

가입 기수	<b>희망 · 내일키움통장 참여(변경) 신청서</b>	처리기간 30일
----------	-------------------------------	----------

구분	<input type="checkbox"/> 희망키움통장 I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input type="checkbox"/> 희망키움통장 II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자) <input type="checkbox"/> 내일키움통장( <input type="checkbox"/> 시장진입형 <input type="checkbox"/> 시장진입형(금융) <input type="checkbox"/> 사회서비스형A(매출액 10% 이상) <input type="checkbox"/> 사회서비스형B(매출액 10% 미만) <input type="checkbox"/> 사회서비스형C(매출액 '0'인 사업단) <input type="checkbox"/> 인턴 · 도우미형) <input type="checkbox"/> 청년희망키움통장(만15~39세 이하인 생계수급 청년) <input type="checkbox"/> 청년저축계좌(만15~39세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
----	-------------------------------------------------------------------------------------------------------------------------------------------------------------------------------------------------------------------------------------------------------------------------------------------------------------------------------------------------------------------------------------------------------------------------------------------------------------------------------------------------------------------------------------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소		전자우편	
	직업	근무지 및 주소		
비상연락	관계	성명	연락처	

가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전화번호
				휴대전화

적립 및 사 용 계 획	1. 신청내용 : 월별 저축액 _____ 원 ※ 저축기간은 36개월
	2. 신청동기 * 가구특성, 현직장 근무경력,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안내받았다면 안내받은 지역자활센터명 등 적시
	3. 저축액 사용계획 <input type="checkbox"/> 저축목적 : <input type="checkbox"/> 주택구입 · 임대 <input type="checkbox"/> 본인 · 자녀의 고등교육 · 기술훈련 <input type="checkbox"/> 창업 · 운영자금 <input type="checkbox"/> 그 밖에 자립 · 자활 <input type="checkbox"/> 향후 자립 · 자활계획 :

유사 자산형성사업 참여 여부	미참여 / 참여(사업명 : _____, 기간 : _____, 수령액 : _____ )
희망 · 내일키움통장 재가입 여부	최초 / 재가입(사업명 : _____, 참여기수 : _____, 적립횟수 : _____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_\_\_\_\_ (인)  
 ※ 신청자 본인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 필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1. 가구에 취업자 1인 이상일 경우 세대주 혹은 주소득자 1인이 신청 할 것
2. 제출한 서류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되지 않음
3. 신청자는 추후 지자체와 연락관계를 가지며, 선정 후 신용교육 등 정해진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석하여야 합니다. 불참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저축 동의서

## □ 동의

- 나는 희망·내일키움통장 적립금을 자산형성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입니다.
- 나는 목적으로 설정한 적립수준을 달성하기 전까지는 매달 저축할 것입니다.
- 적립금은 목적으로 한 적립수준이 도달할 때에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 □ 조건

1. 희망키움통장 I(생계·의료급여 수급자), II(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자), 청년희망키움통장(생계수급청년), 청년저축계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

- 가입 첫 월에 본인저축액과 근로소득장려금이 적립되어야 참여가 확정됩니다.
- 만약 저축목적을 달성하기 전 중도해지\*하여 프로그램에서 탈락할 경우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해지 사유

(희망키움통장 I) 근로소득 6월 연속 미달, 본인적립금 6개월 연속 미납, 압류·가압류, 탈수급 전 본인 요청시 등

(희망키움통장 II) 본인적립금 6월 연속 미납, 교육 이수시간 및 사례관리 횟수 미충족, 연 1회 이상 확인조사 실시하여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 압류·가압류, 3년만기 전 본인 요청시, 사업참여 중 수급자 책정시 등

(청년희망키움통장) 근로사업소득 6개월 연속 미달, 압류·가압류, 탈수급 전 본인 요청시 등

(청년저축계좌) 본인적립금 6월 연속 미납, 교육 이수 미충족, 국가공인자격증 미취득, 연 1회 이상 확인조사 실시하여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 압류·가압류, 3년만기 전 본인 요청 시, 사업참여 중 수급자 책정시 등

-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사용용도\*\*를 증빙하지 못할 경우 본인 적립금 및 그 이지만이 지급됩니다.

\* 지급요건

(희망키움통장 I) 3년 이내 탈수급(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나는 경우),

(희망키움통장 II) 3년 간 통장 유지 +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에 연 4회 이상 이수(교육은 연 2회 이상 반드시 이수)

(청년희망키움통장) 3년 이내 탈수급(생계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나는 경우), 가입기간 중 군입대 시 5년 이내 탈수급)

(청년저축계좌) 3년 간 통장 유지 +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 교육(총3회) 이수

\*\* 사용용도 :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 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

- 지자체는 상담, 경제적인 정보, 자산관리 정보, 프로그램 훈련 및 교육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 계좌관리은행은 매달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계좌의 적립금 상황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2. 내일키움통장(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통장)

- 가입 첫 월에 본인저축액 입금과 지자체의 내일키움 적립 승인 및 내일키움장려금 계좌 신규, 내일키움수익금 계좌가 모두 생성되어야 참여가 확정됩니다.
  - 매월 본인적립금 입금과 가입유지 가능한 사업단에 성실참여(월 실제 근무일수 12일 이상) 하셔야 매월 적립 승인이 이루어지고 내일키움장려금이 생성되며 내일키움수익금은 참여하시고 계신 사업단의 수익금에 따라 차등 생성됩니다.
  - 만약 저축 기간 동안 목적을 달성 및 사용용도 증빙을 하지 못한다면 환수해지\*하여야 하며 가입유지 기간 동안 적립된 내일키움장려금 및 내일키움수익금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본인 적립금 및 그 이지만 지급됩니다.
- \* 환수해지 사유 : 가입 가능한 자활근로사업 6월 연속 미참여, 본인 6개월 연속 미납, 압류·가압류, 교육 및 사례관리 연 4회 미만, 지급요건(가.항 또는 나.항) 미충족 등

\*\* 지급요건

가. 일반노동시장 또는 자활기업,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영역으로 취·창업한 경우 (탈수급 포함) +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에 연 4회 이상 이수(교육은 연 2회 이상 반드시 이수)

나. 학교 입·복학(방통대, 대학원, 사이버대학 제외) 시 +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에 연 4회 이상 이수(교육은 연 2회 이상 반드시 이수) (금융복지지원사업 제외)

\*\*\* 사용용도 :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 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

- 지자체는 상담, 경제적인 정보, 자산관리 정보, 프로그램 훈련 및 교육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 계좌관리은행은 매달 정기적으로 당신의 계좌의 적립금 상황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 □ 계약

- 나는 다음의 내용에 대해 동의합니다.

월 저축액	원	※ 저축기간은 36개월이며, 납입일은 매월 20일
-------	---	-----------------------------

- 나는 위의 계약조건들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희망·내일키움통장 자격·지원 등에 대한 모든 효력이 상실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년 월 일

희망·내일키움통장 신청자 (생년월일)

(성명)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서식 6] <개정 2020.03.01>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대상자	통장구분		가입기수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핸드폰
<p>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2조 제3항, 제23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 I·II, 내일·청년희망, 청년저축계좌)의 참여자로서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 I·II, 내일·청년희망, 청년저축계좌)을 위해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b>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b>			
수집·이용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품 및 서비스 홍보 및 가입 권유</li> <li>▶ 상품 개발, 연구 및 고객 만족도 조사 등</li> </ul>		
수집·이용할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식별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국적, 직업, 주소·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li> </ul> </li> <li>▶ 개인식별정보 외에 신청서에 기재된 정보 또는 고객이 제공한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거 및 가족사항, 세대구성, 결혼여부, 근무지, 소득 등</li> </ul> </li> </ul>		
보유·이용 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동의 철회 시까지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 철회일 후에는 위의 기재된 목적과 관련된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후에도 언제든지 철회 가능합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은 수집·이용 목적과 관련된 상품 및 서비스 안내 등 편의는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수집·이용 동의 여부	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		
고유식별정보 동의여부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		



# 고용·임금 확인서

피고용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고용성격 (피고용자하는일 구체적으로 기재)				
고용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임금지급형태	일당제	1일임금 :		원	
		월평균 고용일수 :		일	
	월급제		월분	월분	월분
		기본급			
		각종수당			
		기타금액 (여비, 자동차유지비등)			
합계금액					
국민건강보험 가입여부	<input type="checkbox"/> 가 입 <input type="checkbox"/> 미 가 입				
<p>상기와 같이 피고용인이 본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사업장명 : _____</p> <p>사업장주소 : _____</p> <p>사업자등록번호 : _____ 전화번호 : _____</p> <p>(영업허가번호)</p> <p>사업주명 : _____ (서명 또는 날인)</p>					
<p>※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p>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수급(권)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임금지급형태	유형	<input type="checkbox"/> 상시근로자 <input type="checkbox"/> 임시·일용직(파출부, 일일잡부 등) <input type="checkbox"/> 자영업(노점·행상, 농어업 등) <input type="checkbox"/> 기타
	직장(사업장)명	

직장(사업장)주소	(전화: )
-----------	--------

소득	일당제	1일임금 월평균 근로일수 :	원 일
	월급제	월 평균 총급여 :	원
	자영업	월 평균 총소득 :	원
	기타	월 평균 총소득 : (이전소득일 경우 지원하는곳 :	원 )

본인은 상기와 같이 소득이 있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 귀하

※ 취업상태나 소득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1. 지원대상자 가구 세대주 인적사항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 2.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자(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

※ 유의사항 : 인감으로 동의할 경우 인감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동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등 보호자의 자필 한글 정자 서명 또는 무인(인감 포함)으로 대신합니다.

세대주와의 관계	동의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sup>1)</sup> (한글정자 서명 또는 무인·인감)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sup>3)</sup> 통보하지 아니함 (한글정자 서명 또는 무인·인감)

- 1) 지원대상자 선정 및 확인조사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 등이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 무자의 금융정보 등을 보건복지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교육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특별시교육감·광역시교육감·특별자치시교육감·도교육감·특별자치도교육감(관련법에 따른 위탁업무수행 기관장 포함, 이하 '보건복지부장관 등'이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2)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별지 제1호서식 구비서류로 제출된 통장계좌번호의 진위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금융기관 등이 계좌 명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3) 금융기관이 금융정보 등을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만일 동의하지 않으면, 금융기관 등이 금융정보 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단, 기초연금의 경우는 별첨서식 「금융정보 등 제공 사실 통보요구서」를 추가로 제출하여 야만 통보됩니다.)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동의서 제출 후 신청 서비스 자격 결정 전(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자는 이력관리 신청서의 유효기간) 까지, 자격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 상실 전까지

5. 정보제공 목적: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긴급복지지원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장애인복지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아이돌봄지원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초·중등교육법」, 「의료급여법」, 「주거급여법」에 따른 복지대상자 선정·확인 조사 지원 및 별지 제1호서식 구비서류로 제출된 통장계좌번호의 진위 여부 확인

년 월 일

금융기관장·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